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07. 6. 18] 조례 제240호

개정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491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 8. 5 조례 제1042호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5>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4>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5>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증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심의결과는 관련 단체 또는 업체 등에 통보하여 홍보 하도록 한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8. 6, 2013. 8. 1, 2018. 12. 28, 2022. 8. 5>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 8. 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 11. 8, 2018. 12. 28>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22. 12. 2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④ 까지 생략

③⑤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③⑥ 부터 ④① 까지 생략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⑥ 까지 생략

④⑦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⑧ 부터 ⑥⑩ 까지 생략

부칙(2013. 8. 1 조례 제491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③ 까지 생략

③④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건설행정담당주사가”를 “건설행정팀장이”로 한다.

㉔ 부터 ㉔ 까지 생략

부칙(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5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